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5951 |
|----------|-------|

발의연월일 : 2026. 1. 9.

발 의 자 : 김도읍 · 이현승 · 조배숙  
김승수 · 서지영 · 김은혜  
구자근 · 박성훈 · 정연욱  
신동욱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중요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지만, 관련 심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국민의 주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또한, 주거정책심의 위원과 그의 일가가 안전과 관련된 지역에 소재하거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에는 제외되어 있음

로 이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 8조의2 신설 등).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에서”를 “조 및 제8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등에”를 “및 공개 등에”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심의서로 갈음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을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br>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br>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br>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br>(이하 이 <u>조에서</u> “위원회”라 한<br>다)를 둔다. |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br>-----<br>-----<br>-----<br>----- <u>조 및 제8조의2에서</u> -----<br>-----.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br>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br>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br>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⑥ -----<br>-----<br>-----<br>----- <u>. 다만, 서면으로 심</u><br><u>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u><br><u>서면심의서로 같음한다.</u> |
| <신   설>                                                                                                            | ⑦ 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br>개하여야 한다.                                                                            |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br>영, 회의록의 작성·보존 등에<br>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br>정한다.                                                     | ⑧ -----<br>----- <u>및 공</u><br><u>개 등에</u> -----<br>-----.                                              |
| <신   설>                                                                                                            |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br>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br>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

제25조(벌칙) (생략)

<신설>

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을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  |                                                                                |
|--|--------------------------------------------------------------------------------|
|  | <u>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u><br><u>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u><br><u>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